



# 활동 보고서

2021.2.20~2023.2.19

제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

제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 활동보고서

2021. 02. 20. ~ 2023. 02. 19.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Busan Human Rights Commission



# 목 차

I. 발간을 축하합니다 /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	4
II. 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내면서 / 부산시 인권위원장 정귀순 .....	6
III. 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주요활동	
1.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설치와 구성 .....	8
2. 5기 인권위원회 활동 .....	12
3. 활동 일지 .....	22
IV. 향후 과제 및 제언	
1. 5기 인권위원회 활동의 성과 .....	26
2. 제언1 : 인권위원회 강화를 위한 과제 .....	27
3. 제언2 : 인권행정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 .....	28
4. 인권단체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	29
V. 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 후기 (가나다 순)	
1. 인권교육은 마음공부 / 구수경 위원 .....	30
2. 씨앗을 심다 / 김경일 위원 .....	32
3. 인권, 행정과 결합하다 / 김태훈 위원 .....	34
4. 인권위원 임기를 마치며 / 김현재 위원 .....	36
5. 인권을 향한 보람있는 의정활동 / 노기섭 위원 .....	37
6. 특별한 위원회, 인권위원회 / 박용민 위원 .....	39
7. 진화하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 반선호 위원 .....	40
8. 활동가로서 인권행정을 말하고 싶었던 2년 / 이규희 위원 .....	41
9. 인권위원 활동을 마치며 / 이현우 위원 .....	43
10. 의지와 마음을 나누고 힘을 보탠다는 것 / 전병호 위원 .....	45
11. 인권의 열매를 맺다 / 최수연 위원 .....	47
12. 인권이 기본이 되는 부산시 정책을 기대하며 / 최영아 위원 .....	48
13.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억소환 / 최진경 위원 .....	49
14.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 / 한남식 위원 .....	50
VI. 첨부자료	
1.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	51
2.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제1호 권고 ~ 제3호 권고) .....	63
3.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의견서 .....	80
4.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성명서 및 의견서 .....	83

# I

##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제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2년간의 활동 기록을 담은 보고서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서 발간에 참여하신 정귀순 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인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평등, 참여, 포용의 가치를 3대 목표로, 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각 부서 의견을 모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20~2024)하여 인권 행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2월, 제5기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그 해 9월부터 시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대전에 이은 전국 두 번째 민간위탁형 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기간 우리 시의 인권 행정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한편, 시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인권 현안 이슈나 기본권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 등 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제5기 인권위원회는 지역 인권 문제나 현안 발생 시 정책권고와 인권정책포럼을 통한 정책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를 통한 전국적 연대로 인권 이슈에 대한 성명·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인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 인권의식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열심히 활동해주신 인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위원회 발자취와 성과가 녹아든 이번 발간 보고서의 내용이 제6기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동력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 한분, 한분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I

## 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내면서



부산시 인권위원장 정 귀 순

5기 인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역사와 개인에게 시간은 때로 얇고 가벼운 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 두텁고 무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5기 인권위원회 2년은 부산시의 인권정책과 행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그리고 함께 활동한 인권위원님들께도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5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인권도시 부산’이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5기 인권위원회의 고민과 노력이 생생하게 담긴 자료입니다. 지난 2년의 활동을 통해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인권행정체계가 구축된 것이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1년 9월 인권보호관 채용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12월에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이후 10년 만에 개소한 인권센터는 타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올만큼 모범사례로 튼튼하게 성장하여 인권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1명의 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팀, 인권영향평가팀으로 성장하는 것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둘째는, 부산시의 인권정책 능력을 높인 것을 들고 싶습니다. 21년 7월, 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언으로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가 개정되어 인권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를 비롯하여 4호의 권고를 한 것과 시의 전체 부서들과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천을 점검하는 ‘인권정책협의회’를 꾸준히 진행하여 자칫 성과에 밀려 인권의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 부서 칸막이를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가능했던 것은 시와 의회, 인권위원회가 서로 협력한, 민관거버넌스의 좋은 사례이자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도 적지 않지만 남겨진 과제와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와 6기 인권위원회에 드리는 ‘제언’으로 4장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모쪼록 5기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닫고 또 한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년간 함께 활동해주신 동료 인권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상임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활동해주신 덕분에 인권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와 나란히 보폭을 맞추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인권부서의 담당자들, 인권위원회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시의원들, 지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성과는 시민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기며 5기 인권위원회를 마무리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2월 19일



1.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제3장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1호 /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 6733호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p> <p>제2조(정의)</p> <p>제2조의2(기본원칙)</p> <p>제3조(시의 책무)</p> <p>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p>	<p>제14조의4(교류·협력 등)</p> <p>제14조의5(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p> <p>제14조의6(인권영향평가의 실시)</p> <p>제15조(교육 및 홍보)</p> <p>제16조 삭제</p>
<p><b>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b></p> <p>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p> <p>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p>	<p><b>제5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b></p> <p>제17조(인권보호관)</p> <p>제17조의2(인권보호관의 직무)</p> <p>제18조(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p> <p>제19조(인권보호관제도 홍보)</p> <p>제20조(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p> <p>제21조(구제위원회의 구성 등)</p> <p>제22조(위원의 해촉)</p> <p>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제24조(구제위원장의 직무)</p> <p>제25조(구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p> <p>제26조(시행세칙)</p> <p>제27~28조 삭제</p>
<p><b>제3장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b></p> <p>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p> <p>제7조(위원장의 직무)</p> <p>제8조(위원회의 회의)</p> <p>제9조(소위원회)</p> <p>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p> <p>제11조(간사)</p> <p>제12조(수당 등)</p> <p>제13조(운영세칙)</p>	<p><b>제6장 보칙</b></p> <p>제29조(결과 및 시정권고 통지 등)</p> <p>제30조(비밀준수)</p> <p>제31조(포상)</p>
<p><b>제4장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의 시행</b></p> <p>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p> <p>제14조의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p> <p>제14조의3(시민 인권헌장)</p>	<p><b>부칙</b></p>

### 제3장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민 인권현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 1. 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 역할

=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 규범에 대한 심의·자문 및 개선 권고

<제5조 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 회의

-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경우 개최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정책소위원회 및 소통소위원회 구성)
- 간사 : 인권업무담당 부서의 장 (행정자치국 민생노동정책과장)

### 4) 위원

- 구성 : 총 15명 이내 (위촉직 위원 13명, 당연직 위원 2명)
- 자격 <제3장 제6조 ③항>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2. 5기 인권위원회 활동

### 1) 위원

가) 위원 : 2023.02.19. 임기종료 시 총 14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

위촉직 인권분야 전문가 12명

시의회 추천 1명, 여성 위원 5명 (41.7%), 장애인 위원 1명 포함)

나) 임기 : 2021년 2월 20일 ~ 2023년 2월 19일

다) 위원 명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연직 외 가나다 순)

성명	소속	직책 및 임기
정귀순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위원장 /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부위원장 /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구수경	부산인권포럼 대표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위촉 위원 (2022.03.14.~2023.02.19.)
김태훈**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위촉 위원 (2022.03.14.~2023.02.19.)
김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노기섭*	부산광역시 시의원(전)	위촉 위원 (2021.02.20.~2022.06.30.)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위촉 위원 (2021.02.20.~2021.11.15.)
반선호**	부산광역시 시의원	위촉 위원 (2022.08.24.~2023.02.19.)
변경택*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 회장(전)	위촉 위원 (2021.02.20.~2021.11.15.)
이현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회원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전병호	이주민문화센터 센터장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최수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최영아*	부산광역시 시의원(전)	위촉 위원 (2021.02.20.~2022.06.30.)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한남식	진구쪽방상담소 소장 / 부산노숙인시설협회 회장(전)	위촉 위원 (2021.02.20.~2023.02.19.)
이병석*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당연직 (2021.02.22.~2021.07.27.)
안병선*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당연직 (2021.02.20.~2021.07.06.)
나윤빈*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당연직 (2021.07.28.~2022.02.28)
조영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장	당연직 (2021.07.07.~2021.12.31.)
이선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장	당연직 (2022.01.01.~2022.12.31.)
김효경*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	당연직 (2022.03.01.~2022.08.04)
이수일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국장	당연직 (2022.08.05.~2023.02.19)
안경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장	당연직 (2023.01.01.~2023.02.19)

\*는 임기 중 사임 위원, \*\*는 임기 중 추가 위촉위원

## 2) 회의

가) 개최실적 :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4회, 소위원회 25회

- 2021년 : 정기회의 1회, 임시회의 2회, 소위원회 12회
- 2022년 : 정기회의 1회, 임시회의 1회, 소위원회 12회
- 2023년 : 임시회의 1회, 소위원회 1회

### 나) 회의 일정 및 안건

회의명	개최일	안 건
2021년 정기회의	2021.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장 수여</li> <li>●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li> <li>●인권노동정책담당관 업무보고</li> <li>●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li> </ul>
2021년 제1차 임시회의	2021.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센터 추진 현황</li> <li>●인권정책기본계획 연차별 과제 이행평가 추진현황</li> <li>●차별적 행정용어 개선 추진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 인권주간 운영계획</li> </ul>
2021년 제2차 임시회의	2021.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정책권고 및 결과 점검의 건</li> <li>●제2호 정책권고 준비의 건</li> <li>●2021 인권주간 운영의 건</li> <li>●인권위원 사임의 건</li> </ul>
2022년 정기회의	2022.0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기 인권위원회 보고 및 활동방향</li> <li>●부산시 인권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li> <li>●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계획 보고</li> </ul>
2022년 제3차 임시회의	2022.0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활동방향 보고 및 논의</li> <li>●부산시 인권정책 현안 보고</li> </ul>
2023년 임시회의	2023.0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호 정책권고</li> <li>●평가 및 활동 마무리 (5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li> </ul>
		
2021 부산시인권위원회 내부 워크숍		2022 부산시인권위원회 임시회의

#### 다) 소위원회

- ① 구성 : 정책소위원회, 소통소위원회
- ② 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회의명	개최일	논의 내용
소통소위원회 (정책권고 1~2호 준비)	21.05.09.	형제복지원피해자 1차 간담회
	21.05.30.	형제복지원피해자 2차 간담회
	21.06.14.	형제복지원피해자 지원센터 방문간담회
	21.07.07.	형제복지원사건특별위원들과 간담회
	21.11.10.	노숙인지원시설 실무책임자 간담회
	21.11.16.	노숙인 당사자 간담회1
	21.11.18.	노숙인 당사자 간담회2
	21.11.18.	노숙인 당사자 간담회3
	21.12.03.	노숙인 업무 담당 부서 간담회
	22.01.17.	부산지역 홈리스 지원단체 간담회

정책소위원회 (인권정책협의회 및 3~4호 권고 준비)	21.09.07.	2022 1차 인권정책협의회 (인권노동정책과)
	21.09.14.	2022 2차 인권정책협의회 (사회재난과, 창조도시과, 도시디자인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걷기좋은부산추진단)
	21.09.17.	2022 3차 인권정책협의회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21.09.28.	2022 4차 인권정책협의회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21.10.06.	2022 5차 인권정책협의회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기후대기과,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22.04.12	3호 권고 준비 1차 회의
	22.04.18	3호 권고 준비 2차 회의
	22.04.27.	2022 상반기 인권정책협의회 1차 (일자력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건강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22.05.02	3호 권고 준비 3차 회의
	22.05.06.	2022 상반기 인권정책협의회 2차 (도시디자인과, 버스운영과, 걷기좋은부산추진단, 택시운수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22.05.09	3호 권고 준비 3차 회의
	22.05.12	장애인 당사자 간담회
	22.09.16	권고 추진상황 점검
	22.10.24.	2022 상반기 인권정책협의회 1차(민생노동정책과, 예산담당관, 성비위근절추진단,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공공디자인과)
	22.10.25.	2022 상반기 인권정책협의회 2차(건강정책과, 노인복지과)
	22.12.13.	4호 권고 준비 1차 회의
23.01.16	4호 권고 준비 2차 회의	

라) 인권위원회 워크숍 및 토론회

워크숍	일정	내 용
내부워크숍	2021.0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기 인권위원회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 정귀순, 인권위원장</li> </ul> </li> <li>●부산시 인권행정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 송시섭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li> <li>●부산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 노기섭, 인권위원 / 부산시 의원</li> </ul> </li> </ul>
정책토론회	2021.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시 인권센터설립 정책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li> <li>- 김종남, 대전인권센터장</li> <li>- 전진희, 울산인권센터장</li> <li>-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li> </ul> </li> </ul>
부·울·경	2021.09.30.~1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및 정책</li> </ul>



인권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발표 :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부울경 인권위원회 현황 ▶발표 :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장
	2022.06.16.~06.17.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 ▶발표 : 이진숙, 전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지자체 2022년 인권정책 현안 토론 ▶발표 : 정귀순, 부산시 인권위원장

### 3) 정책권고

#### ① 배경

2021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인권위원회의 기능 중 자치법규 및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2021년 8월 31일 제1호 권고 이후 4호 권고를 함

제5조 (인권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권고 내용 (※ 각 권고 내용은 별첨)

회 차	내 용
제1호	‘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제2호	‘ 부산광역시 홈리스의 인권보장 ’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제3호	‘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제4호	‘ 부산광역시 구군 인권행정체계강화 ’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 4)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참여

##### 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근거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7. 14.>
-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 1>

##### 나) 추진 과정

- ▶ 2021.05.11. 인권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
- ▶ 2021.08.~09. 부산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제안서 제출
- ▶ 2021.10.15. 민간위탁자 결정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 ▶ 2021.12.10. 부산시 인권센터 개소식



다) 주요 사업 (2022년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인권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 활동 지원</li> <li>- 부산지역 인권현안 토론회 (노인, 노숙인, 공영장래 등) 개최</li> <li>- 인권실태조사 실시(장애인 참정권·이동권 및 비주택거주민 거주환경 조사)</li> <li>- 인권브리프 발간</li> <li>- 부산인권콘퍼런스 개최</li> </ul>
인권교육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시민/공무원/학생 인권교육 실시</li> <li>- 부산시민 인권특강 및 인권활동가 교육</li> <li>- 부산인권역사탐방 지도 및 달력 제작</li> <li>- 형제복지원 기억캠페인 활동</li> <li>- 부산광역시 청소년 인권공모전 개최</li> <li>- 인권소모임 지원 활동</li> <li>- 부산인권영화상영회 개최</li> </ul>
인권옹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민 인권침해 및 일반상담 활동</li> <li>- 피해자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MOU</li> <li>- 부산시 인권침해사례 및 인권침해구제단체 사례집 발간</li> </ul>

5) 인권정책 발굴



가) 차별금지법제정 시민공청회 공동개최

- ▶ 일시 : 2021.08.27.
- ▶ 내용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 발언

나) 10.17 빈곤철폐의 날 기념 토론회 공동개최

- ▶ 일시 : 2022.10.17
- ▶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장래 이후 과제

다) <부산인권정책포럼> 참여

포럼	사 진	일 시	내 용
6차 포럼		2021.03.16	●2021 부산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7차 포럼		2021.06.23	●부산의 인권현안1 -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8차 포럼		2021.09.27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9차 포럼		2021.12.08	•2021 부산의 인권을 돌아보다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기자회견 후 3인 3색 이야기 나눔
10차 포럼		2022.04.20.	•2022 부산 인권 5대 과제
11차 포럼		2022.07.20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
12차 포럼		2022.12.07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기자회견 후 3인 3색 이야기 나눔

## 6) 대외협력활동

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이하 광역협의회) 참여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2021년 6월 2일 전북 도청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협의회 회의 진행</li> <li>•차차기 의장도시 선정 (인천광역시)</li> </ul>
2021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 토론회</li> <li>•광역협의회 회의 진행</li> <li>•차차기 의장도시 선정 (대전광역시)</li> </ul>
2021년 12월 6일 온라인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광역협의회 운영 논의</li> </ul>
2022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광역협의회 운영계획 논의</li> <li>•지자체별 인권위원회 및 인권업무 현황 논의</li> </ul>
2022년 7월 7~8일 인천광역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회 : 지자체 인권기구 제도화</li> <li>•인권특강 : 평등법 / 기후·생태위기와 인권</li> <li>•차차기 의장도시 결정 (부산광역시)</li> </ul>
2022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의 인권영향평가와 지역인권위원회의 역할</li> <li>•지자체별 인권업무 추진 현황 공유</li> <li>•인권기본조례 개정 표준안 의견수렴</li> <li>•광역협의회 성명서 발표 결의</li> </ul>

	
<p><b>나) 부울경 인권위원회 협력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울경 인권위원장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04.06 1차 간담회</li> <li>22.03.16 2차 간담회</li> <li>22.12.22 3차 간담회</li> </ul> </li> <li>▶ 부울경 인권위원 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09.30~10.01 산청한방호텔</li> <li>2022.06.16.~17 경주 한화호텔</li> </ul> </li> </ul>	
<p><b>다) 구군 인권위원회 협력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06.10 진구인권위원회 워크숍 참여</li> <li>▶ 22.12.09 부산시 구군인권위원 간담회 개최</li> </ul>	

## 7) 언론 보도자료

### 가) 보도자료 제1호 (2021.08.31)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권고

### 나) 보도자료 제2호 (2022.01.17.)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홈리스의 인권보장” 권고

### 다) 보도자료 제3호 (2022.05.19.)

- 내용 :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아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 “이동약자에게 편한 길은 시민 모두에게 편한 길입니다”

라) 보도자료 제4호 (2022.07.26.)

- 내용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의견서 - ‘인권’이 사라진 행정조직 개편에 반대합니다

마) 보도자료 제5호 (2023.02.14.)

- 내용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구·군 인권행정체계 강화” 권고

### 3. 활동 일지

	차 시	일시 및 장소	내 용
2021년			
1	위촉식 및 1차 회의	2월 22일 16:00~18:00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장 전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4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 및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사업 계획 보고 ●소위원회 구성 등 이후 일정에 관한 건
2	부산인권정책포 럼 제6차 포럼 공동개최	3월 16일 15:00~17:00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2021 부산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3	*부울경 인권위원장 협의회	4월 6일 10:30~12:00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2021 인권현안 공유 ●부울경 지자체 인권위원 리더십과정 운영논의
4	1차 워크숍	4월 13일 14:00~16:00 의회 지하 1층 회의실	●5기 인권위원회 사업계획 논의 ●인권기본조례개정의 건 논의
5	운영팀 회의	4월 21일 16:00~18:00 (사)이주민과함께	●소위 구성안 ●상반기 활동 내용 및 일정 ●현장간담회 일정
6	형제복지원피해 자 1차 간담회	5월 9일 14:00~16:00 사회복지연대 교육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의 현안 및 부산시 제안사항간 담회 진행
7	인권센터설립 정책토론회	5월 11일 15:00 ~ 17:00 시의회 중회의실	●부산시 인권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8	형제복지원피해 자 2차 간담회	5월 30일 13:00~14:30 민주공원 소극장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의 현안 및 부산시 제안사항간 담회 진행
9	*광역시지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6월 2일 15:00~17:30 전북도청 회의실	●광역시지체인권위원회협의회 회의 진행 ●차차기 의장도시 선정 (인천광역시)
10	*진구인권위원회 워크숍 참석	6월 10일 13:00~15:00 시민공원 내 동백홀	●지자체 인권행정체계구축
11	형제복지원피해 자 지원센터 방문간담회	6월 14일 13:00~14:30 형제복지원피해지원센터	●센터 운영현황 청취
12	부산인권정책포 럼 제7차 포럼 공동개최	6월 23일 15:00~17:00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부산의 인권현안1 -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13	공영장례조례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7월 5일 15:00~17:00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공영장례조례의 필요성 및 조례제정 현황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조례 초안
14	형제복지원사건 특별위원들과 간담회	7월 7일 10:00~12:00 시의회 원탁회의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정책권고에 대한 논의
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사회의	8월 25일 10:00~17:00 온라인 진행	
16	차별금지법제정 시민공청회 공동 개최	8월 27일 16:00~18:0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발언
17	제1호 정책권고 기자회견 및 부시장 간담회	8월 31일 10:00~10:40 시의회 대회의실	●제1호 정책권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정책권고 행정부시장께 전달 및 간담회 진행

18	1차 임시회의 개최	8월 31일 10:50~12:00 시의회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센터 추진 현황</li> <li>•인권정책기본계획 연차별 과제 이행평가 추진현황</li> <li>•차별적 행정용어 개선 추진 현황</li> <li>•2021 인권주간 운영계획</li> </ul>
19	인권정책협의회 1차	9월 7일 14:00~16:00 시청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생정책관 과제 협의 (노동 및 인권 부문)</li> </ul>
20	인권정책협의회 2차	9월 14일 14:00~16:00 시청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재난과, 창조도시과, 도시디자인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걷기좋은부산추진단</li> </ul>
21	인권정책협의회 3차	9월 17일 14:00~16:00 시청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li> </ul>
22	인권정책협의회 4차	9월 28일 14:00~16:00 시청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li> </ul>
23	부산인권정책포럼 제8차 포럼 공동개최	2021년 9월 29일 15:00~17:00 시의회 중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드(with)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li> </ul>
24	부울경 인권위원회 워크숍	9월 30일 ~ 10월 1일 산청한방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및 정책 특강 및 토론</li> <li>•부울경 인권위원회 현황</li> </ul>
25	인권정책협의회 5차	10월 6일 14:00~16:00 시청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기후대기과,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li> </ul>
26	2차 임시회의 개최	10월 25일 15:00~16:15 시의회 중회의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1차 정책권고 및 결과 점검의 건</li> <li>② 제2호 정책권고 준비의 건</li> <li>③ 2021 인권주간 운영의 건</li> <li>④ 인권위원 사임의 건</li> </ol>
27	*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10월 7일 14:00~16: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 토론회</li> <li>•광역시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회의 진행</li> <li>•차차기 의장도시 선정 (대전광역시)</li> </ul>
28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자문회의	10월 21일 10:00~12:00 시의회 중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시 인권정책 추진현황 및 인권현안 브리핑</li> </ul>
29	노숙인지원시설 실무책임자 간담회	11월 10일 16:00~18:00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호 권고 준비</li> <li>•부산지역 노숙인지원시설 현황 및 제안사항</li> </ul>
30	*경남 인권위원회 및 인권담당자 워크숍	11월 17일 14:00~17:00 창원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인권행정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구축</li> </ul>
31	노숙인 당사자 간담회1	11월 16일 14:00~16:00 금정희망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정희망의집 입소자 2명 및 센터장과 간담회</li> </ul>
32	노숙인 당사자 간담회2	11월 18일 14:00~15:30 진구쪽방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구쪽방상담소 및 동구쪽방 상담소 이용자 3명 및 담당자 간담회</li> <li>•진구쪽방 현장방문</li> </ul>
33	노숙인 당사자 간담회3	11월 18일 16:00~17:00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희망등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잠자리 이용자 2명 간담회</li> <li>•시설 견학</li> </ul>
34	노숙인 업무 담당 부서 간담회	12월 3일 16:00~18:00 시청 3층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과, 주택정책과 노숙인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 진행</li> </ul>
35	*광역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의	12월 6일 10:00~11:30 온라인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광역협의회 인권위원회 운영 논의</li> </ul>
36	부산인권정책포럼 9차 포럼 공동개최	12월 8일 15:00~17:00 시의회 중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 부산의 인권을 돌아보다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기자회견 후 3인 3색 이야기 나눔</li> </ul>
37	*73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12월 10일 10:00~11:40 시청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념공연 및 세계인권선언 낭독</li> </ul>
38	*부산광역시	12월 10일 15:00~16:00	



	인권센터 개소식	부산시 인권센터	
39	정책소위원회	12월 23일 10:00~12:00 시청 3층 회의실	●2차 권고안 검토
<b>2022년</b>			
40	제2호 정책권고 기자회견	1월 17일 10:30~11:10 시의회 브리핑룸	●제2호 정책권고 “부산광역시 홈리스 인권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정책권고 행정부시장께 전달
41	부산지역 홈리스 지원단체 간담회	1월 17일 11:20~12:20 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참석 후 부산지역 홈리스 지원단체와 간담회 진행
42	2022 정기회의 준비회의	2월 3일 16:00 시청 3층 회의실	●2022년 인권정책 추진 및 인권위원회 활동 내용 검토
43	2022 정기회의	3월 14일 15:00~17:00 시의회 대회의실	●5기 인권위원회 보고 및 활동방향 ●부산시 인권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계획 보고
44	부울경 인권위원장 협의회	3월 16일 10:00~13:0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2022 지자체 인권현안 공유 ●부울경 지자체 인권위원 리더십과정 운영논의
45	*제19차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	3월 24일 15:00 인천 하버파크호텔	●2022년 협의회 운영계획 논의 ●지자체별 인권위원회 및 인권업무 현황 논의
46	정책소위원회	4월 12일 15:00~16:30 부산시 인권센터	●3호 권고 준비 1차 회의
47	정책소위원회	4월 18일 15:00~16:30 부산시 인권센터	●3호 권고 준비 2차 회의
48	부산인권정책포 럼 제10차 포럼 공동개최	4월 20일 15:00~17: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2022 부산인권 5대 과제
49	2022 상반기 인권정책협의회 1차	4월 27일 10:00~12:00 시청 3층 회의실	●원자력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건강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50	정책소위원회	5월 2일 15:00~16:30 부산시 인권센터	●3호 권고 준비 3차 회의
51	2022 상반기 인권정책협의회 2차	5월 6일 10:00~12:00 시청 3층 회의실	●도시디자인과, 버스운영과, 걷기좋은부산추진단, 택시운수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52	정책소위원회	5월 9일 15:00~16:30 부산시 인권센터	●3호 권고 준비 4차 회의
53	정책소위원회	5월 12일 15:00~17:00 부산시 인권센터	●3호 권고 의견수렴 장애인 당사자 간담회
54	제3호 정책권고 기자회견	5월 19일 10:00~10:30 시의회 브리핑룸	●제3호 정책권고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정책권고 행정부시장께 전달
55	*2022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워크숍	6월 16일~17일 경주 한화리조트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 ●지자체 2022년 인권정책 현안 토론
56	부산인권정책포 럼 제11차 포럼 공동개최	7월 20일 15:00~17:00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
57	*제20차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 및 워크숍	7월 7~8일 인천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토론회 : 지자체 인권기구 제도화 ●차차기 의장도시 결정 : 부산광역시 ●인권특강 : 평등법 / 기후·생태위기와 인권

58	의견서 발표	7월 26일 부산시 및 언론사 전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에 대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의견서 발표 — ‘인권’ 이 사라진 행정조직 개편에 반대 합니다
59	임시회의	8월 24일 10:00 부산시 인권센터	●하반기 활동방향 보고 및 논의 ●부산시 인권정책 현안 보고
60	정책소위원회	9월 16일 15:00 부산시 인권센터	●권고 추진상황 점검 및 활동보고서 준비의 건 ●2022 인권주간 운영에 관한 건 ●인권영향평가 검토보고(인권보호관)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 주거권실태조사 계획보고(인권센터)
61	*제21차 전국광역시자치 인권위원회협의회	10월 13일 13:00~15: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자체의 인권영향평가와 지역인권위원회의 역할 ●지자체별 인권업무 추진 현황 공유 ●인권기본조례 개정 표준안 의견수렴 ●협의회 성명서 발표 결의
62	10.17 빈곤철폐의날 기념 토론회 공동개최	10월 17일 16:00~18:00 시청 1층 대회의실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장래 이후 과제
63	2022 하반기 인권정책협의회 1차	10월 24일 14:00~15:30 부산시 3층 회의실	●민생노동정책과, 예산담당관, 성비위급절추진단,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공공디자인과
64	정책소위원회	10월 24일 16:00~17:30 부산시 3층 회의실	●4호 권고 준비 및 활동보고서 준비의 건 ●2022 인권주간 운영 점검 ●구군 인권위원 간담회 추진의 건
65	2022 하반기 인권정책협의회 2차	10월 25일 14:00~15:30 부산시 3층 회의실	●건강정책과, 노인복지과
66	*2022 인권옹호사회의	10월 31일~11월 1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지역인권제도화 10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과 전망
67	*2022 부산인권콘퍼런스	12월 5일 10:00~16:00 부산백스코 제2전시실	●section1 : 인권행정의 길찾기 ●section2 : 안전한 인권도시 길찾기
68	부산인권정책포럼 12차 포럼 공동개최	12월 7일 15:00~17:00 시의회 중회의실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기자회견 후 3인 3색 이야기 나눔
69	*7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12월 9일 09:30~10:30 시청 대강당	●기념공연 및 세계인권선언 낭독
70	부산광역시 및 구군 인권위원회 간담회	12월 9일 11:00~12:30 시청 12층 소회의실	●부산시 및 구군 인권위원회 활동 공유 및 주요 인권정책 논의 ●향후 부산시 및 구군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71	정책소위원회	12월 13일 16:00~17:30 부산시 인권센터	●4호 권고 논의
72	*경남 인권위원 및 인권담당자 워크숍	12월 19일 15:30~16:40 경남 도청 세미나실	●2022 경남 인권증진워크숍 — 주민 인권의식 향상방안 및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의식 증진방안 토론
73	* 부울경 인권위원장 협의회	12월 22일 11:00~12:0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2022년 업무추진 및 2023년 계획 공유●부울경 인권위원회 현황 공유
<b>2023년</b>			
74	정책소위원회	1월 16일 15:00~16:30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4호 권고 논의 및 5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검토
75	임시회의	2월 14일 10:30~11:30	●4호 권고 발표 및 5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활동 마무리

※ \*는 외부 연대 및 협력회의 참가

5기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의미있는 성과들도 적지 않으나 아쉬웠던 점, 계획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도 적지 않다. 이에 향후 제도 마련과 시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여 향후 6기 인권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의 협조와 위원회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5기 인권위원회 활동의 성과

###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

2012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었던 ‘인권센터 설치’ 조항이 만 10년만인 2021년 12월 10일 부산시와 인권위원회, 의회의 협력으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개소로 실현되었다. 특히 부산지역 10개 인권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과정에 힘을 실었고, 부산시의 인권정책과 교육, 시민참여와 교류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탄탄하게 키워가고 있어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2) 정책권고

4기 인권위원회는 활동을 마치며, “심의·자문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인권행정이 앞서있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과 같이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역할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다. 이에 5기 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을 통해 2021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자치법규 및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5조 2항) 이에 2021년 8월 31일 제1호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권고’에 이어 ‘홈리스 인권보호 및 증진’,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 보장 및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의 인권행정체계강화’를 위한 4호 권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과 과제들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었다.

### 3) 인권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

2020년 부산시와 4기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잘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과 인권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인권정책협의회의 성과는 ①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추진되는 ‘인권’ 관련 사업들을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

하고 점검하여 부산시 전체의 인권정책의 수준을 높였다는 점 ② 인권부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 점 ③ 인권위원회와 인권부서가 함께 전문성을 키워왔다는 점 ④ 무엇보다 인권위원회에서 부서간막이를 넘어 인권과제들을 시와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었음이 큰 의미가 있다.

#### 4) 2024년 <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도시 선정

4기 인권위원회에 이어 5기 인권위원회 활동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2024년 부산시가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정책과 인권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 2. 제언1 : 인권위원회 강화를 위한 과제

### 1) 합의제행정기구로의 장기전망과 중간과정으로 상임 인권위원 선임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인권행정추진체계 구축방안의 장기적 전망으로 인권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여 인권보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인권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합의제행정기구로의 전환은 충분한 논의와 정책적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다. 그러한 전망 아래 중간과정으로 인권위원 중 상임인권위원을 선임하여 정책실현의 집중을 높여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정책권고 이행력 높이기

5기 인권위원회 2년간 4호의 권고를 하였다. 각각의 권고는 충분한 고민과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행결과를 세심하게 다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임기 마지막 권고인 4호 권고는 시기적으로 이행결과는 보고 받지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 권고는 권고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만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권고와 더불어 해당 부서의 후속 조치 등 권고의 이행결과를 잘 챙겨 구체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영향력도 높일 필요가 있다.

### 3) 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업무 지원 필요

5기 인권위원회의 70여회에 이르는 회의와 활동들은 부산시 인권행정에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는 오롯이 인권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다. 인권부서의 예산 부족으로 위원들은 회의 수당없이 회의에 참석했고, 필요한 경비들을 자체적으로 조

달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향후 6기 인권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체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4)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도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인권부서와 의회, 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가칭) ‘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인권 영역을 대표하고, 활동성과 전문성, 인권감수성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고 공신력 있는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인권위원 15명 중에는 당연직 인권위원<sup>1)</sup>으로 ‘행정자치국장’과 ‘사회복지국장’ 2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인권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향후 당연직 위원들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촉구한다.

### 3. 제언2 : 인권행정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

#### 1) 시장 주재의 ‘부산시 인권정책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

5기 인권위원회 임기 2년 동안 인권위원회와 시장의 공식 면담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인권도시 부산’을 선언한 이후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와 1년간의 변성완 권한대행체제, 보궐선거 이후 1년간 박형준 시장 임기, 지난해 단체장 선거 등 불안정하게 운영된 것도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인권도시로서의 부산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시장이 주재하고 각 부서장 및 인권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시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 2) 인권행정부서의 전문성 확보

인권도시의 운영과 실천에서 인권담당부서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5기 인권위원회의 임기 2년간 인권담당부서 국장은 4번 바뀌었고, 과장과 팀장도 3번 바뀌었다. 평균 8개월 정도 업무를 맡은 셈이다. 이 기간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고사하고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권행정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시의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와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이 공무원들이 단기간 머물다 거쳐가는 부서로 머문다면 부산은 결코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향후 인권부서는 전담공무원제도(전담관)을 확실히

1)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계 시행 정착시켜 인권관련 행정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인권정책과’ 신설

부산시에 ‘인권’ 명칭을 가진 부서로 2019년 1월 ‘인권노동정책과’가 처음으로 탄생하여 짧은 기간에도 인권행정체계 구축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8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노동 부서를 각각 독자적인 ‘과’로 행정체계 강화를 제안한 바 있으나, 선거 이후 시의 행정체계 개편은 오히려 기존 과의 명칭에서 인권은 사라지고 ‘민생’으로 개편되어 인권행정의 후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부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인권부서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 4) 시·구군 인권협력체계 구축

현재 16개 구군 중 인권조례 제정은 10개 구군에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구군은 전체 50%에 불과하다.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과제 중 ‘시·자치구 인권협력체계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제 1-6), 부산시의 인권정책과 행정은 구군과 함께, 구군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많은 만큼 구군의 인권행정체계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시는 구군과 인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행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향후 6기 인권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4호 권고의 이행결과를 잘 살피 구군의 인권행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 4. 인권단체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 1) 인권단체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부산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력체계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5기 인권위원회에서도 <부산인권정책포럼>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 작업을 진행해 민관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 온 만큼, 향후 6기 인권위원회에서는 부산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부산지역 대학 및 연구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권관련 전문가 발굴 및 협력관계 형성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권교육은 마음교육, 마음공부



부산인권포럼 대표 구 수 경

여러 가지 마음이 올라온다. ‘활동 소감’이라는 주제에 따르면 ‘마음’보다 ‘업적’이 먼저여야 하는데 마음이 앞장선다. 미안함, 고마움, 아쉬움, 서운함, 감사함 들이다.

2022년 비로소 부산시가 직접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고 부산시와 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실천을 향해가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고맙다. 선언을 재차 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 번 말을 하다 보면 실천력도 더 생길 것이고, 부산시는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제패하는 사회가 될 지언정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더욱 경시되어지고 있으며, 언제 어떤 재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올지 모르는 위태한 세상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내일 또 만나자”라는 말보다 “오늘, 지금 당장 그대와 함께”를 믿는다고 한다. ‘희망’은 미래지향적인데 반해 ‘라잇, 나우’는 희망이 없음, 미래가 없음, 내일이 없음, 왠지 허무하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에게 단지 선언만이 아닌 희망과 미래를 주기 바란다.

어떤 누구도 어떤 생명도 추위에 떨거나 굶주리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외면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기본 인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추위에 떨지 않게 하거나 굶주리게 하지 않게 하는 것과 달리 배제, 소외, 외면은 정책적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인간의 오욕칠정과 감정도 관여한다. 인간은 이것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선자는 ‘수행’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다. “개를 사랑해서는 안돼”라고 해서라고 마음이 바로 따르지는 못한다. 인권교육은 타인에 대한 존재와 생명체를 인정하

기 위한 마음교육이다. 인권교육은 마음공부이다. 나는 계속 마음공부를 해나갈 것이다.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자잘한 마음으로 혹 불편했던 위원들이 있다면 미안하다. 어찌면 나도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다. 이젠 다 고맙다. 5기 인권위원님들과 더 활발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듯하여 아쉽다. 앞으로는 어떤 기회에서라도 아쉬움 없이 하리라. 여러 배움이 많았던 위원회 활동이다.

5기 인권위원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 좋은 씨앗을 심다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김 경 일

사회복지운동을 하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며 복지 운동이 인권을 지향하고 있음을 깨달은 시간은 부끄럽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어로만 맴돌던 인권을 정책으로, 행정 체계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구조화시키는 경험은 아마도 이번 인권위원회 참여를 통해 체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정책권고 활동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호 권고와 제2호 권고의 주제가 사회복지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권위원회가 부산시의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 권한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유가족, 실종자분들의 명예회복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참 어려웠던 우리 사회의 최대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부산시는 걸치레에 가까운 사업만 시행해왔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작년 8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폭력임을 인정했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1차 권고로 진행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권고>는 세월이 흘러 잊혀져만 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다시금 각인시키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피해자 간

담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 또한 앞으로 부산시가 인권정책의 지향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감동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도 사건이 진행 중인 부산지역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권을 등한시했던 방역정책과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제2호 권고 또한 한 명의 활동가로서 뜻깊은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의 권고가 현재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어지는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꼭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권고가 아니더라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들여다보고 부산시의 각 부서별 사업진행과 이행점검, 협의 등은 타 시도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논의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강조되어왔지만 사실 행정부서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인권위원회가 진행했던 인권정책협의를 그런 의미에서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위원회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이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사실 그토록 활동하고 싶던 인권위원회 활동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지,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솔한 자기 검열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부산시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권’ 위원회이기에 그 무게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감히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인권행정이 강화되고 인권정책 사업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 있든 건강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최대 인권유린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가 부산이었지만 이제는 인권이 더욱 보장되는 도시로 말 그대로 인권존중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 행정과 결합하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김 태 훈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김태훈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의해 근거하여 설립된 공적기관입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조사 및 지원, 장애인 학대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며 광역시 행정에서 인권위원회 활동이 어떤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며 생각한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란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막상 그 인권을 찾고 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먼 곳에 있다’ 라고. 저 또한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단어 속에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 하는 일상임에도 떨시와 힘으로 얼룩져버리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인권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모습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역시 행정에서 있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의제를 시민에게 이야기하고 행정은 그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이 무엇인지 고민되었습니다.

첫 위원회 회의에서 들었던 단어가 인권이 스며드는 행정, 인권행정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행정은 정해져 있는 딱딱한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인권을 혼합시킨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며 이러한 의문을 다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권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원칙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행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간과하고 법과 제도에 얽매어 사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원칙을 지키며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보장,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홈리스의 인권보장 등 행정에서 충분히 이행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여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행정뿐 아닌 16개 구·군의 인권위원회와 소통을 추진하였으며 이름만 올려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활동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함께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큰 뿌듯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환경 변하고 사람들이 생각과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 속에 항상 숙제가 있고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활동을 보며 이 숙제는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인권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인권위원 임기를 마치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현 재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저희 5기 인권위원회는 2021년 2월 대장정의 첫발을 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는 대외적으로 미안마 군부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우리 인권위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 차례의 정책권고를 통해서 홈리스 노숙인들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관심과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부지중에 사용하는 차별적인 행정용어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숨가쁘게 활동하면서도 서울, 광주, 인천 등 타 시의 인권위원회와도 긴밀하게 네트워킹을 통한 의견교환과 상호학습을 통한 발전도 이루어 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 노동, 차별 등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시 인권센터가 설립된 점은 우리 인권위원회의 역사적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보장된 환경과 인프라 속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시민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2년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어렵게 잡은 산청호텔 인권위원 워크샵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하루 전 취소되어 아쉬웠던 기억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인권위원님, 간사님, 부산시청의 관계자님들께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고마웠습니다.

## 인권을 향한 보람있는 의정활동



전 부산광역시 시의원 노 기 섭

제8대 부산시의원 노기섭입니다. 8대 의회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였고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인권과 관련이 높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였고,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름 보람있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산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 부산’을 시정목표로 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예산은 터무니없이 작고, 집행부의 인권에 대한 의식도 낮았습니다. 예산없이 인권도시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고, 집행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권 관련 사업들은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북 행정, 말만 무성한 말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021~2022년은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부족한 예산과 집행부 의지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권고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②항은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 권고기능이 신설되어 ‘홈리스 인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 권고’ 하였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권고’와 ‘노숙인 인권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개소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부산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더 힘차게,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인권운동을 위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波浪)’ 이 설립 되었습니다. ‘인권플랫폼 파랑’ 도 부산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8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산위원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작지만 나름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인권도시 부산’ 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波浪)’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특별한 위원회,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박 용 민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장 박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나, 2021 부산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중 장애인 부문을 담당하기도 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간담회 및 정책권고 준비 활동을 했기 때문인지, 임기에 비해 제법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권센터로 적을 옮기면서 부산시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하지 않았다면, 지난 2년의 활동을 복기하는 이 지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만큼 인권위원회 활동은 제가 참여했던 부산시의 여느 위원회들과 달리,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지난 4기에 이어 5기에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원회 운영의 중심에는 정귀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란 존재 때문이란 것은, 인권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사실 정귀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기 전 인권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여느 위원회처럼 1년에 1~2회 회의하고 마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귀순 인권위원장의 헌신과 이를 뒷받침했던 인권위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인권위원회는, 여느 부산시의 위원회와 달리, 특별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6기 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그저 그런 위원회가 아닌, 특별한 위원회로 운영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장으로 서 6기 인권위원회를 지원하며, 함께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화하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시의원 반 선 호

2022년 7월 1일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과 일들의 낯설을 몸으로 부딪히고 있던 어느 날 인권위원회 위원 참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권위원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위원장님께 여쭙었을 때, 위원장님의 간결한 답변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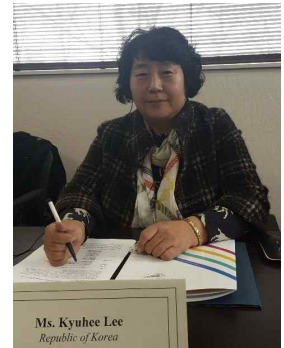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 똑같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권리,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인권위원이 되었으나,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인권위원으로서 좀 더 활동하게 된다면 위원회의 위원님들과의 좀 더 많은 만남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인권이 우선시 되는, 진화하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권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는 2023년이 되는데 미약한 힘이나마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활동가로서 인권행정을 말하고 싶었던 2년



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이 규 희

4기 인권위원회 활동에서 애정이 묻은 제 2차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매년 실행과정을 부산광역시 부서들과 협업하면서 부산시민의 인권지수는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5기를 시작하였다. 4기 활동에서 보여준 단합과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2~3회의 짧은 만남을 소위원회 및 정책포럼, 토론회 등의 활동으로 민관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행정조직 내 인권보호관 업무와 침해구제위원회가 발족되어 실질적으로 진영을 갖추는 형식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인권센터를 민간영역에서 협의를 거쳐 위탁형으로 설립을 결정하고 12월 개소식을 필두로 인권행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함이 되었다. 그리하여 분기별 정책 포럼 외에도 정책토론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조례개정을 통해 인권위원회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인권정책을 당사자, 활동기관, 전문가, 정책부서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권고를 하게 된 것은 5기 위원회 활동 중 힘들었지만 보람된 활동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다음 인권위원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필요로 하지만 시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인권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주실 것으로 권유 드린다.

2022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코로나19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전국적인 인권위원회 활동과 인권행정이 축소 혹은 민관거버넌스가 실종되어 파고를 준비해야하는 해가 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였다. 부산광역시는 2024년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회의 의장도시로 선정되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한 해였다.

부산은 예로부터 풍전등화의 시기에 피난민들을 함께 보듬고 국가적 교육과 산업을 태

동시켜 국가발전을 이루고, 민주화운동의 발상지가 되었지만, 형제원과 같은 국가폭력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도 공존하는 인정과 협치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민관거버넌스 행정을 활성화하여 인권행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교육과 홍보의 중심이 되고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침해 행위는 부산시의 인권보호관 및 침해구제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조사와 해결이 이루어지고, 인권위원회가 구군의 인권위원회와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인권행정이 시민의 고단한 삶을 기댈 수 있고 안심하고 존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현장에서 십 수년간 인권감수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매해 고민을 하는 활동이 시민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와 단체 그리고 어려움의 실체를 접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하고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활동이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접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과 기관을 접하면서 인권위원회 활동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12월 연구모임으로 발족한 인권포럼 등 여러 인권행정에 도움이 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연결된 수많은 단체와 소중한 활동가들과의 협업은 부산광역시의 인권행정의 발전하는 데 힘을 함께 모으고 좀 더 공부하고 함께하는 활동가로 거듭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5기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하고자 한다.

## 인권위원 활동을 마치며



이현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현 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2022년도 활동을 마지막으로 인권위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 보다 성실한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활동내역을 정리하다 보니 막상 해가 지날수록 활동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의 짐이 큼니다.

이번 인권위원회 임기 동안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가 문을 열어 본격적으로 인권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인권정책담당관 등을 통해 부산시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22년도에는 부산시에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플랫폼 과당이 설립되는 등 부산시의 인권정책과 인권행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개별적 활동으로는 부산 노숙인 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렸던 사회적 약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관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다음 인권위원회에서는 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인권행정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방지침들이 검토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반성을 해보자면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맡은 사건들로 인해 인권위원회 활동을 할 여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일과 인권위원회 활동 사이에 역량 배분이 중요하였지만 적절한 배분에 실패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와 같이 인권정책과 현안에 함께 의견을 밝히고 논의할 수 있는 단체가 다양하였으나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위원회에서는 인권 현안에 관심을 가진 지역 법률 단체들과 함께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행정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각 법률가 단체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에도 응원해주시고 전문적 견해를 나눠주신 여러 인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가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지와 마음을 나누고 힘을 보탠다는 것



이주민문화센터 센터장 전 병 호

2019년 2월 4기 인권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기 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눈팔다가 어느새 종착역에 도달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임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물리적 시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건 별로 한 것 없이 시간만 흘러보낸 것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가끔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지만,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가 2012년 2월 22일 제정되고 10년을 지나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이 있었겠지만 최근 4년의 변화는 결코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초 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센터의 설립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와 자문이라는 경계가 명확하여 자칫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인 영향력이 없는 위원회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고, 인권센터의 설립은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는 모두 동감하였지만 ‘언제쯤 가능할까?’ 라는 의문과 함께 먼 훗날에 이야기할 계획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논의되었던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립이라는 과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을 휴지기로 지냈습니다.

길었던 이전의 휴지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4년 동안의 활발한

활동과 역할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성과를 이루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의 소위원회 중심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권센터의 설립 역시 여러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요원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산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기 시작한 것과 3차에 걸친 정책권고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본 권한이 제대로 사용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에는 7,430개의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제정되어 있고 그중 심의와 자문 기능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상당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몇 가지의 중요한 일들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를 가진다는 것, 마음을 품는다는 것, 힘을 보탠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4기와 5기에서 함께 했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와 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업무를 진행하셨던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차기 인권위원회가 더욱 안정적이며 활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인권의 열매를 맺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최수연

제4기 인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그 중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자문’ 과 함께 강한 의견을 담은 ‘권고’ 가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개정으로 제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제1호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 제2호 ‘부산광역시 홈리스의 인권 보장’, 제3호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정책권고를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정책 권고안을 준비하면서,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이며, 누구나 인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활동으로써, 분야별로 인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부산인권센터 창립은 부산지역 인권의 허브, 시민이 늘 함께하는 인권 공간으로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권’ 이 사라진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5기 부산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제4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 위에 인권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활동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인권의 바다에서 마음껏 배우고 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 드립니다.



## 인권이 기본이 되는 부산시 정책을 기대하며



함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전 시의원) 최 영 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권위원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느새 5기 인권 위원회가 임기가 끝이 났네요. 이번 인권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면 무지 바쁘고 즐거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를 참 많이 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전 인권위원회와는 다르게 참 다양하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일 년에 정기적인 회의 말고는 거의 하지 않았던 위원회였는데 이번 인권위원회는 자주 만나고 회의도 잦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 부서와의 인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인권 따로 정책 따로임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부산시의 모든 부서에서 정책을 할 때 인권이 기본이 되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시작한 정책협의회가 앞으로도 잘 진행되어서 인권이 바탕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3번의 권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권고문을 작성할 때도 많은 분과 함께 논의하고 당사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권고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5기 인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여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권위원회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억소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최진경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이 시간은 결국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마무리를 함께 하지 못한 위원님들, 또 그 자리를 채워 준 위원님들, 꾸준히 함께 해 온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진작 연락을 좀더 자주 할 걸하는 후회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고를 위한 조례개정, 인권센터 설립, 2년간 이루어진 인권관련 업무 부서협의회, 3차례의 권고와 기자회견, 구군 인권위원과의 만남 등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방문과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꼼꼼하게 챙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한 마음에 간직합니다. 특히 행정개편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이 빠져 분노와 허탈감이 있긴 하였지만 인권의 존재함을 위해 준비하고 기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소를 구하느라, 부서협의회를 위한 시간을 위해 고생하신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라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와의 공식적인 인연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 예측하며,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노력을 바깥에서, 현장에서 함께 할 준비를 해 봅니다. 뭐 특별할 것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 내며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이니 말입니다. 인권보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안심하고 사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역사적 현장에 함께한다는 것



진주쪽방상담소 소장 한 남 식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부산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의 인권이 발전했다는 증거는 현장에서 인권이 지켜질 때라고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신 결과로 오랫동안 바랐던 인권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사항들이 현장에서 다 지켜지고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으로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1호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88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3-19 조례 제 5003호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81호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2-25 조례 제 509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8-01 조례 제 57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 5832호  
 (일부개정) 2019-01-09 조례 제 584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93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 6057호  
 (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 641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1-07-14 조례 제 6435호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 6535호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 673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 6804호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 제1장 총칙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시민 스스로 도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의2(기본원칙)**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

## 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 제3장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9. 1.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19, 2019. 1. 1, 2021. 7. 14.>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5.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민 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1.12.29.]
-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4.>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 1. 1>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 1. 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3. 19>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1. 1>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의 시행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13조의2** [종전 제13조의2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1. 7. 14.>]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7. 14.>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4. 3. 19>

**제14조의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 ② 시장은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3(시민 인권현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현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4(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5(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



**제14조의6(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7. 14.>]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 삭제<2014. 3. 19>

## 제5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 <신설 2020. 1. 1.>

**제17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7. 14.>

1. 삭제<2021. 7. 14.>
2. 삭제<2021. 7. 14.>
3. 삭제<2021. 7.. 14.>
4. 삭제<2021. 7. 14.>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3.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인권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본조신설 2020. 1. 1.]

[종전 제1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1. 1.>]

**제17조의2(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라 신고되거나 인지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2.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권고
3. 제29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의 점검
4.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4.]

**제18조(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5.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수탁기관
6.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따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4. 신고가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2. 28.>
5. 그 밖에 인권 보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및 피해자의 보호 방법,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종전 제1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1. 1.>]

**제19조(인권보호관제도 홍보)** ① 시장은 시본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인권보호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외의 대상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

시하거나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0조(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구제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1.]

[제목개정 2021. 7. 14.]

[제21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1조(구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제위원회는 구제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제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2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 1.]

[제23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구제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4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4조(구제위원장의 직무)** ① 구제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구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5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5조(구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구제위원장은 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구제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4.]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7. 14.>]

**제2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구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9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7조 삭제** <2021. 7. 14.>

**제28조 삭제** <2021. 7. 14.>

## 제6장 보칙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29조(결과 및 시정권고 통지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인

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그 내용을 신고자, 피해자, 행위자 및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시정권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21. 7. 14.>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별도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0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3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구제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1.>

[제17조에서 이동 <2020. 1. 1.>]

**제31조(포상)**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18조에서 이동<2020. 1. 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

부칙<2014. 3.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을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17) ~ (100)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20) 생략

(21)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2) ~ (5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④ ~ (2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⑫ ~ (95) 생략

부칙<2019.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② ~ (73) 생략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⑳ 생략

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한다.

㉕ ~ (65) 생략

부칙<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㉔생략

㉕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㉖~(79)생략

부칙<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2021.12.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72) 생략

부칙(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난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준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1.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광역시의 책임이 엄중한 국가 차원의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부산광역시는 2019년 9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및 시의회의 공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 2.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할 것

나. 부산광역시는 시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여 전담인력 증원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다.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할 것

라. 지원사업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에 따른 긴급지원, 복지지원, 의료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할 것

마.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전문인력을 갖추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것

바. 위 다~마 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군산하기관과 공공자원연계 및 민간자원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사.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의 보존 및 자료관 운영을 추진할 것

4. 부산광역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

## □ 권고배경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에서 시작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이 정부의 사회통제에 입각한 부랑인정책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수용과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던 중 1975년 부산시와 체결한 부랑인일시보호위탁계약과 같은 해 12월 부랑인의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배경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거리 등에서 무고한 시민을 강제 납치·수용하여 이들에 대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행함으로써, 1987년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일부 시신은 의료실습 해부용으로 팔려나간 사건으로서 일명 ‘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릴 만큼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중)

2018년 9월 16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에서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자료들을 모두 찾아달라는 것을 포함한 11가지 요구사항을 부산광역시에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시민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9년 4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고, 2020년 1월 30일 동구 초량동에 62평 규모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공식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명예회복, 진상규명, 지원을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였으나, 2021년 2월 부산시 인권위원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확인, 일상생활 유지 및 복귀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호소하여, 같은 해 5월 9일과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 간담회 및 6월 14일 피해자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2019년 조례제정 및 부산시장의 공식사과에서 밝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상담과 조사업무,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겨우 2명의 채용직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정부 및 부산시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신뢰할만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부산광역시는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차원진상규명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확대의 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참조)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상 최대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의 말과 실천이 따로 놀지 않고 계획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구축 및 신속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충실한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과 조치가 부산시의 인권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 ‘부산광역시 홈리스의 인권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홈리스’ :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권고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주 및 주거(하우스 house)에 기반하고 있는 ‘노숙인’이라는 용어 보다 탈노숙 및 지역사회로의 정착 등 보다 근원적인 정책과 사업을 위해 삶의 지지기반이자 관계의 중심이어야 할 홈 home의 상실 및 부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홈리스’ (homel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sup>2)</sup>

###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시가 부산지역 홈리스의 인권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 빈곤과 실업률 악화 등으로 홈리스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홈리스의 주거, 의료, 급식, 노동 등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들이 ‘코로나 방역 및 지원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해 아래의 권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홈리스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홈리스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홈리스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람.

2) 참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노숙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위 법률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3.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바람. (동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1~5호 참조)

- ①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 ②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 ③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 ④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⑤ 노숙인 시설의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 ⑥ 노숙인 일자리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 ⑦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 ⑧ 여성 장애 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 ⑨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 ⑩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 ⑪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권고배경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한국정부에 대한 제4차 최종권고를 통해 홈리스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다루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우려하며,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UN CESCR, 2017)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23일, UN은 ‘코로나-19와 인권 :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COVID-19 and Human Rights : We are All in this Together)’ 발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차별적임을 강조하며 공적 정보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거나 접근성이 낮은 소수자와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이들의 생계와 의료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2020. 4.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 Protection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제시되는 ‘집에 머물기’, ‘자가격리’, ‘물리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과 같은 조치들은 적절한 주거시설을 확보한 사람들만의 조치일 따름이며, 존재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홈리스와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침들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부산시 산하 홈리스 시설(응급잠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대응에서 부산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의심자 격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공간에 강제로 격리하는 인권침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34명 중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홈리스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자가격리 공간의 부재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홈리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주거와 의료, 노동 등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던 무료급식 문제, 지정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 문제, 과밀한 노숙인 시설 및 쪽방·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권고이유

### ▶ 일시보호시설 현황

- 홈리스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홈리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거리 홈리스 중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홈리스에 비해 거리의 홈리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0%에 불과합니다.<sup>3)</sup> 현재 부산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는 응급잠자리(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내 / 1일 평균 25명 이용)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응급잠자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되었고, 동절기에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오전 7시 이후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 타 시도에서는 홈리스의 상담, 검진, 안정적인 주거로 연계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진단검사 연계 및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을 확장한 것에 비하면 부산시는 홈리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런 이유로 홈리스 지원현장에서는 지난 12월 응급잠자리 확진자 발생 전까지 홈리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행운에 가깝다고 합니다.

###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현황

- 현재 부산시에는 「노숙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의료원이 2020년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숙인의 진료, 입원 및 수술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20년 6월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1차 의료기관 9개, 2차 의료기관 1개를 추가 지정하여 총 27개의 노숙

3) 2021.09 보건복지부 전국통계에 따르면, 시설 입소 홈리스의 백신 접종률 92.9% vs 거리 홈리스의 백신 접종률 47.7%에 불과함.

인 진료기관을 지정하였으나, 3차 지정의료기관은 없습니다.<sup>4)</sup>

- 노숙인 지정의료기관 추가 지정은 일면 노숙인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거리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고려할 때 1차 병원보다 검사와 수술 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과 3차 병원 지정이 더 절실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시의 대응은 오히려 응급상황 대처 및 효과적인 치료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의 재정적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행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이동과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으며, 공익병동의 경우 통합간병체계가 운영되는 부산의료원과 달리 지정병원에서 통합간병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숙인 지원기관의 업무 하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공공 급식서비스 관리 및 운영 현황

- 많은 부산 시민들은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 섰던 홈리스 분들은 다 어디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동안 무료급식 서비스에 의존해왔던 거리노숙인의 급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우려로 인해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를 비롯하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던 대부분의 급식서비스는 중단되고, 도시락, 주먹밥, 빵 등을 포장해서 나누어 주는 소규모 민간 급식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행히 2021년 11월부터 동구 소재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민간단체들이 준비하는 급식서비스가 진행되어 점심과 저녁 각 55명, 1일 110명의 홈리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현황

-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 준비 과정에서 부산시의 홈리스 지원사업 및 정책들이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기보다 부서별로 경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탈노숙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사업이 배치되지 않아 시설을 전전하거나 다시 거리 노숙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주택정책과의 홈리스 지원사업은 지원의 핵심인 탈노숙의 비율을 높이려면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주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무료진료소 1개소 (희망대종합지원센터 내 사랑그루터기), 1차 의료기관 25개소 (16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9개), 2차 의료기관 2개소 (부산의료원 및 알로이시오기념병원)

## □ 권고 사항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지역 홈리스에 대하여 부산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책과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1. 일시보호시설 설치

- 거리노숙인의 상담 및 검진 등 홈리스들이 안정적인 주거시설로 연계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 연계, 백신보장을 위한 휴식공간, 감염의심자 격리시설로서의 기능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 적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2차 및 3차 의료기관 추가지정)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체계 구축

- 홈리스 역시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으로 부산시의 공공의료 수준 향상 및 홈리스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공공의료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의 확충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 외 권역별로 1개소의 병원급 이상(2차 병원)의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 및 1개소 이상의 3차 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1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합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홈리스의 정신건강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등 전문영역과 지원시설의 연계 및 현장보호지원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거리노숙인 주요 밀집지역에 결핵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홈리스 현장진료센터’ 설치를 해야 합니다.

### 3. 부산시에서 급식서비스 관리 및 운영

- 코로나-19 재난상황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민간에 의존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불안정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홈리스의 급식서비스는 필수서비스로 규정하고, 끼니를 걸러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노숙인복지법」 및 「식품위생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에 의거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균질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공공 급식서비스를 관리 및 운영해야 합니다.

#### 4.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전담팀 구성 및 인권옹호관 배치)

- 단순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방식이 아니라 탈 노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재정착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주택정책과, 건강정책과에 각각 홈리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노숙인 인권옹호관’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제2항 및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근거하여 홈리스 지원 및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탈 노숙 및 예방 조치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5)</sup>

2022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

5)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제2항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부산광역시 이동약자<sup>6)</sup>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동약자에게 편한 길은 시민 모두에게 편한 길입니다”

###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가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부산광역시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개선을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2017~2021)을 수립했고, 2019년 9월에는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 제정했으며,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럼에도 이동약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권고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부산광역시는 이동약자들이 행정과 복지, 문화와 편의의 중심인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 내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구·군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집행하기 바람.
3. 또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동약자 중 특히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의 모든 투표소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로 정의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통뿐 아니라 보행 및 공공·행정시설에의 접근성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본 권고에서는 이들을 통칭하여 ‘이동약자’로 부르기로 한다.

에 장애인의 안전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 권고 배경

1. 2020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이동약자는 총 977,401명으로 부산시민 335만여 명의 29.1%로 시민의 1/3이 이동약자입니다. 특히 전체 이동약자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5.27%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sup>7)</sup>
2. 부산광역시는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령인구 및 장애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7년 제1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한 이후, 현재 4차 증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3.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 수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 및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의 실행 수준을 현안 자료와 아울러 최근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 한 달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다루고자 부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을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아울러 6월 1일에 치러지는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7)

< 부산광역시 이동약자 현황 >

구분	범위	인구수 (단위 : 명)	%
장애인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83,827*	8.6
노인	65세 이상 인구	646,232	66.1
임산부	당해 신고된 출생자	15,100	1.5
영유아	0~4세 인구	134,888	10.0
어린이	5~9세 인구	97,354	13.8
합계		977,401	100.0

출처 :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착수보고회 자료  
(\*장애인 인구의 경우 176천여 명이나, 노인 및 어린이 인구를 제외한 인원임)

자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 □ 권고 사항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다음의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광역시에 권고합니다.

- (1)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 (2)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
- (3)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
- (5)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 □ 권고 세부 내용

### 1.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 1-1. 부산시·구군 협의체 구성

-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버스, 두리발 등 특별교통수단, 지하철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차장 환경개선, 횡단보도, 육교, 유효보도폭 확보, 가로수와 가로등 설치, 점자 블록과 보도블록 설치 등을 포함하는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에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부서들의 상호협의구조 구축 및 시와 구·군이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합니다.

#### 1-2.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 현재 이동약자 중 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의 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향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내지는 신설되어야 합니다.

## 2.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

### 2-1. 저상버스 확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및 제14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 1월, 3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기준 85개 노선 722대 운영 중으로서 이동약자의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중교통입니다.
- 부산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8.7%로, 서울시 보급률 59.4%의 절반 수준이며,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광역시 저상버스 목표치 42%, 전국 평균 보급률 41.4%에 턱없이 미달하여, 8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합니다.<sup>8)</sup>
- 따라서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확충하여,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종료되는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4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운행 노선도 확대해야 합니다. (144개 노선 중 85개 노선 운영)

### 2-2. 버스정차장 환경 개선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와 버스 승차장의 단차로 유모차나 휠체어의 승차가 쉽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스 승차장의 점검 및 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저상버스 도입 시 버스 승차장 환경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동시에 이동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2-3.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2021년 12월 현재 187대 확보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8)

< 전국 광역시 저상버스 보급 현황 비교 (2021.12 현재) >

시·도	노선수	면허 대수	저상버스
전국 평균		16,500	6,829 (41.4%)
부산	144	2,517	728 (28.9%)
서울	356	7,395	4,397 (59.4%)
대구	117	1,537	608 (39.5%)
대전	101	1,015	340 (33.4%)
광주	101	999	303 (30.3%)
인천	207	2,204	370 (16.7%)
울산	112	900	110 (12.2%)

부족으로 차량 일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22.04 평균 배차 대기시간 10분이라고 하나, 배차 이후 실제 승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 ~ 1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외곽에서 배차 요청 시 차량 도착시간 지체로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충원으로 운휴 차량 및 배차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및 탑승 인원에 따른 차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만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 2-4. 도시철도 안전 강화

- 이동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은 2018년~2021년, 4년간 총 135건의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에는 아이들이 빠지는 것을 비롯하여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면역, 연산역, 남포역에서 전체 사고의 87%가 일어났습니다.
- 따라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발빠짐 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주변 유모차 및 휠체어의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지하철 내 상가, 가판대, 의자 등 설치 시 이동 경로 및 공간의 최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 3.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 3-1.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

- 「도로교통법」 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2022년 4월부터 개정 시행되었는바, 이동약자, 특히 어린이 및 장애인의 이동이 빈번한 시설 및 지역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 3-2.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 2019년 9월 제정·발표한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부산광역시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장전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지킴이단의 운영강화 및 민관협력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

##### 4-1.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는 22년 4월 28일~5월 12일 동안 부산시·구·군청, 행정복지센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등 총 1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sup>9)</sup>
-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이동약자 혼자 건물진입이 가능한 경사로가 있는지, 어려움을 경우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오’ 응답 (53.12%). ▶이동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오’ 라 응답 (45.45%). ▶특히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동 및 버튼 조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40.7% 기관이 ‘아니오’ 응답이 나왔습니다. (아래 조사 결과 참고)
- 요컨대, 이동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 공공시설, 민간위탁기관 특

9)

<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문항별 응답현황 >

순위	문항 내용	‘아니오’ 응답률(%)
①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이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저귀 교환대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예)	67.86%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과 피난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피난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나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56.63%
③	건물 출입구에 경사로는 이동약자 혼자서 접근이 가능한가요? 어려움을 경우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53.12%
④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1.4m×1.4m)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43.88%
⑤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점형블록이 출입구 전면, 계단 시작과 끝지점 전면,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40.31%
⑥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 예, □ 아니오)엘리베이터 내부의 경우 휠체어 이동 공간 (1.4m×1.4m)이 확보되어 있거나, 휠체어 장애인이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버튼이 있나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33.10%
⑦	아동과 노인 등을 위해 계단 단차가 16cm 이하이며, 계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논슬립)와 난간대(핸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24.52%
⑧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주차 폭 90cm 이상의 주차장이 있나요?	22.45%
⑨	건물 출입 시, 이동약자를 위한 차도와 구분된 1.2m 이상의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어 있나요?	18.88%
⑩	출입문의 경우, 문턱은 2cm 이하, 문 폭은 80cm 이상, 손잡이 높이는 80~90cm 사이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예)	12.76%

※ 2022.05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 결과

히 사회복지관의 접근성 및 건물 내부 이동 편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 특히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는 통합돌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 및 협력하여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4-2. 부산시 차원의 행정시설 신·개축 시 기본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 향후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행정시설을 신축, 개선할 때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부산시 차원의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5.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 5-1.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한 지원책 강구

-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에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6개 구군 92개 투표소 장애인의 투표소의 접근성, 이용편의성, 외부 안전성 등 16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sup>10)</sup>
- 이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약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인권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개선을 권고받은 투표소는 적합한 곳으로 교체 및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향후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10) ▶투표소 모니터링 주요 결과를 보면,

- 92개 투표소 중, 적합 10개소, 부적합 9개 포함 개선 권고 투표소 총 82개소이며,
- 부적합 9개소의 주요 사유는,
  - 투표소가 건물 2층이나 엘리베이터 없음 : 1개소
  - 경사도 45도 이상으로 임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 : 5개소
  - 출입문 너비 80cm 미만 전동휠체어 진입 불가능 : 2개소
  - 건물 내외부 적재물 등으로 안전 우려 : 1개소
- 개선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은,
  - 계단, 턱이 있어 임시 경사로 설치 필요 : 24개소
  - 출입문 너비, 이동통로, 경사도, 공간협소 등 향후 대체 공간 필요 : 18개소
  - 장애인 화장실 없음 : 55개소
  - 장애인 주차장 없음 : 45개소
  - 보행로와 차도 구분 없어 안전 우려 : 15개소
  - 점자 유도블록 미설치 : 48개소

5-2. 행정 및 공공시설 나아가 민간시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의 필요성  
- 덧붙여 이번 시민인권모니터단의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다수가 행정복지센터, 노인정, 복지관, 학교 시설(체육관 등) 등 이동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기본적인 접근성이나 이동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 및 공공시설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정 등 민간 시설이나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의견서

‘인권’이 사라진 행정조직 개편에 반대합니다

### □ 의견

1. 부산광역시는 7월 23일, ‘민선 8기 새로운 도시비전 및 목표 실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 행정기구 개편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내용 중, 제14조(행정자치국) 제1항 행정자치국에 “총무과·자치분권과·인사과·협치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를 “총무과·자치분권과·인사과·민생노동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로 개정하여, 기존 민생노동정책국 산하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편재하여 ‘민생노동정책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재편하는 것은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로 이해하려 하였으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인권노동정책과’를 ‘민생노동정책과’로, ‘인권’을 삭제하는 명칭 변경은 민선 8기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시정(市政)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으므로, 현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행정자치국’을 ‘인권행정자치국’으로 개편하고, ‘노동’과 ‘인권’을 독립된 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 □ 이 유

1.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19년이 지난, 2019년 1월 비로소 부산시에 ‘인권’의 이름이 명시된 ‘인권노동정책과’가 만들어져 인권행정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7년이 지난 일로, 전국광역단위 타시도에 비해 아주 늦은 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인권행정전담부서가 발족한 지 3년 6개월간, 부산시 인권행정은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의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2019년 12월부터 매년 인권주간 지정 및 인권문화제 등 인권행사 개최, 2020년 8월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21년 9월 인권보호관 임용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2021년 12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 등 인권행정이 싹을 틔우고 뿌리내려, 이제 타 시도에서 부산시를 모범적인 사례로 방문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3. 그 결과 지난 7월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의에서 2024년 부산시가 의장도시로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특별히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박형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15분 행복도시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개편에서 시장님의 인권철학이 만천하에 공표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과 밀접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 중심 시각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서의 업무와 기능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부서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민생’이란 용어는 ‘민생경제’를 주된 개념으로 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이 포함됨에 따라 경제부시장 산하 부서에 ‘민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현 부서의 소관 업무를 직관적이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인권과 노동을 키워드로 부서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들은 민선 8기의 부산시정에서 도시의 가치와 철학이 튼튼하게 정립되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진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 의견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26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

위 원 장 정귀순,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부위원장 이규희, 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위 원 구수경, 부산인권포럼 대표

(가나다 순)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태훈,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김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회원)

전병호, 이주민문화센터 센터장

최수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최진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한남식, 부산노숙인시설협회 회장

## 첨부자료4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견서

##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협의회 의견

1. ‘법안 “에서는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조직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정해야 한다(제7조).

-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없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안에 적시되어 있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기본 업무 중에는 검찰을 비롯하여 구금시설 및 출입국 관리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대부분 업무에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사안이 집중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안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 제정안 초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시작했다가, 국무총리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정 입법 예고된 것은 국가인권정책의 범정부적인 성격과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로 갈 경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바, 이는 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2007년부터 15년 동안 미흡하게 운영되어온 기본계획이 다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부분은 모호한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제8조).

- 먼저, 법안에서 말하는 ‘인권기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기구는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맨을 비롯하여 전담 부서로 인권담당관, 인권팀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법안 제8조 제5항에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량의 폭을 넓혀 놓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법안의 정의 규정(제3조)에 추가하여 인권기구가 무엇이며 어떠한 기

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 둘째, 법안에는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인권기구의 주요 업무인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과 ‘정책적’ 심의·자문 및 권고 기능이 누락되어 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에서 이러한 예방적·정책적 기능이 이미 수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능을 기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적 권한’ 유무를 시비하는 다툼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 발전을 오히려 역행시킬 수 있다.

3.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을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에” 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된다(제12조).

- 이로 인해 결국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입법 목적과 달리 기본계획의 본질과 내용이 정치적 판단으로 오염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

4.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권고사항과 이행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여야 한다(제20조).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각종 법 제정 및 개정 사항이 상당부분 포함되므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를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하여야 한다.

5. 기업활동의 영향력 확대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5장(기업과 인권)의 각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각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제22조(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제1항을 “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수정하고, 동조에 “기업은 노동자(근로자)의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는 조항과 “기업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인권경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의 책무를 세밀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 제23조 제1항~제4항 주어 “정부” 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끝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에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인권영향평가는 지역 구성원의 인권침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제도화되지 못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입한 곳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법령·제도 수립, 정책 입안 및 집행, 그리고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또는 주민)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하루속히 법적 장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등과 같이,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법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경우, 인권행정의 핵심제도가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조항> : 법안 제18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함.

**제18조(인권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입법, 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8. 4.

###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귀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윤대기  
광주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관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민식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세화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건수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우삼열  
경상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용근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승혜경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설동훈

전라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희숙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신강협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인권보장체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다. 20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과 각 지역인권사무소 설치 등 지역인권체계 구축에 앞장섰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했다. 한국사회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을 축하드린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고민해오고 실행했던 지역인권보장체제는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처해 있다. 각 지자체 인권보장체제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부침이 많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행정부와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 인권위원회를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공무원들의 의도와 달리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특징에 기반한 인권기구의 요구는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 또한 인권기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기구의 형태와 위상, 역할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에 근거한 인권기구 전문성과 독립성 기준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표준조례안 제시 이후 지역인권보장체계 실질화와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지역 인권이슈에 개입, 판단, 행동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권행정 조직과 공식적 협력관계 설정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관료화와 중앙집중화 현상에 대한 비판도 높다.

10여년 실험해온 지역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새로운 도전이 요구된다. 20년이라는 긴 시간과 사회적 흐름의 변화는 역시 국가인권위에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인권보장체계에 있어 각 지역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기구의 정의와 역할 위상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규범의 안정화

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는 인권보장체제를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한 필수법안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현장인 지역 이슈를 기본으로 하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권보장체계 안정화와 실질화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 필요  
하다.

인권이 국가규범이 된 20년이다. 규범의 실현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다시 20년을  
맞아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단 한명도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  
가? 지금부터 다시 숙제를 풀기 위해 첫발을 떼기 바란다.

2021. 11. 26.

###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위원장단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정귀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윤대기  
광주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관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민식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세화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건수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우삼열  
경상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용근  
경상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승혜경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설동훈  
전라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희숙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신강협



# 성명서

## 시민인권보장과 지방정부의 인권행정구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를 촉구합니다!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및 인권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국가위원회도 2012년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및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14일, 시정혁신의 일환이라는 미명 아래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각종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켜 위촉직 민간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지방정부 중 최초로 인권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인권 행정을 거부하는 것이자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인권 행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실체적인 사건인만큼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사태는 17개 지방정부가 시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례로 충청남도에서도 일부 반인권적인 인사들에 의해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전임 인권위원회의 임기만료 이후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6월 지방 선거 이후 단체장에 따라 행정의 퇴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는 각 지방정부의

인권 행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인권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 나아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인권 중심의 가치공동체 실현 주민참여구조에 기반한, 인권거버넌스 창출을 통해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되는 지향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되고 중요한 책무를 져야 합니다.

이에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위원회협의회는 다시 한번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폐지철회를 촉구하며, 지방정부의 인권증진과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잊지 않고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 역시 인권 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 성명서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한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에 국회가 원 구성에 합의하여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국회 정상화의 의미가 무색하게 법안 심의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2007년부터 수립이 시행되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권정책이 통합적이고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등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심의 조정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과 과제를 별도의 법률안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적 인권정책을 총체적으로 체계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관련 규정이 담겨있기에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기능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법률 제정안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왔고, 애초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했으나 공청회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위상을 높였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권정책이 국가정책의 총체적 근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이 제정안은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와 인권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구체화했으며, 인권실태조사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규정 및 인권교육의 실시 등 다양한 인권보장체계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해 인권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권정책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다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인

권기구 관련 조항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 및 정책적 심의·권고 규정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의 인권 기준을 UN의 권고에 맞추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 검토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 의결을 통해 입법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법률 제정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행정이 더욱 체계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는 시대적 요구와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본 법률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0. 18.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

---

## 제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21.02.20. ~ 2023.02.19

---

2023년 2월 인 쇄

2023년 2월 발 행

---

발 행 처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 화 051) 888-6464

홈 페이지 <https://www.busan.go.kr/index>

인 쇄 보안기획 051) 255-5675

---

---

제5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